

### 【도쿄도 아동 기본 조례 제정 경위】

“도쿄도 아동 기본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로, 2021년 3월 26일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근거하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함.
- 아동의 안전과 안심, 놀이터, 제3의 공간, 배움, 의견 표명, 참여, 권리 옹호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아동 정책의 기본적인 시점을 규정함.
- 아동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에 대해 규정함.

### 【도쿄도 아동 기본 조례 전문】

아동은 큰 잠재력을 지닌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사회의 보물인 아동은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모든 영역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생명·생존·발달에 대한 권리, 아동의 의견 존중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아동도 낙오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무력무력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아동을 소중히’라는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근거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 넘치는 국제도시 도쿄의 사명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두드러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도쿄도의 책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아동의 웃음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념 및 도쿄도가 실행해야 할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

(목적)

제 1 조 본 조례는 아동의 웃음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념 및 도쿄도가 실행해야 할 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본 조례에서 “아동”이란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에 관한 시책을 실시할 때는 제 3 조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시책의 대상 범위를 정한다.

(기본이념)

제 3 조 아동은 큰 잠재력을 지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하에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무력무력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아동을 키우는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

(아동의 권리)

제 4 조 도쿄도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비롯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아동 친화적인 도쿄의 실현)

제 5 조 도쿄도는 사회 전체가 아동을 키우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도쿄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시책을 우선해서 추진한다.

(아동의 안전 및 안심의 확보)

제 6 조 도쿄도는 아동을 범죄, 사고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과 안심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아동 놀이터 및 제 3 의 공간 조성)

제 7 조 도쿄도는 아동이 무력무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구 및 시정촌(이하 ‘구시정촌’이라고 한다)과 연계하여, 아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놀이터 및-제 3 의 공간 조성 등의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

(아동의 배움 및 성장에 대한 지원)

제 8 조 도쿄도는 아동의 배움에 대한 의욕과 배움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자립성과 주체성을 키우는데 필요한 환경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아동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육아 가정 및 아동에 맞춘 다각적인 지원)

제 9 조 도쿄도는 각종 불안과 고민에 직면한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보호 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육아 및 업무 방식에 대응한 환경의 정비, 전문적인 상담, 정보 제공 및 기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아동의 의견 표명과 시책에 반영)

제 10 조 도쿄도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하고 또한 그 의견이 시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의 정비를 도모한다.

(아동의 참여 촉진)

제 11 조 도쿄도는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연령 및 각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의 정비를 도모한다.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계발)

제 12 조 도쿄도는 아동의 권리 및 이익의 존중에 관한 홍보 및 기타 계발 활동을 추진한다.

(아동 상담에 대한 대응)

제 13 조 도쿄도는 아동이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동으로부터의 상담에 대응하는 체제의 확충과 더불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동의 권리 옹호)

제 14 조 도쿄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권리 침해 및 그 외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등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아동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구시정촌 및 기타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체제의 강화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아동 관련 계획의 수립)

제 15 조 도쿄도는 아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제 3 조의 기본 이념에 따른다.

(아동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

제 16 조 도쿄도는 아동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

(재정상의 조치)

제 17 조 도쿄도는 아동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토)

2 본 조례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때, 조례 시행 상황 및 아동을 둘러싼 상황 등을 검토하여 시대의 요청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전항의 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다.